

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동의안

1. 취 지

관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중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저소득주민)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데 따른 융자 담보 능력부족으로 은행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채무(지급) 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계획

- 융자금액 : 885,000천원
- 융자한도액 : 가구당 500만원
- 융자금리 : 연 3% (신청자부담)
- 상환조건 : 2년이내 정기 상환
(단, 전세계약시 1회(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우선순위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시행
- 융자은행 : 한국주택은행 피정동지점
- 융자기간 : '94. 5. 1~12. 31
- 융자절차
 - 융자 대상자 신청서 거주지 등에 접수
 - 동장은 사실 조사후 적격자 구에 추천
 - 구청장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의 확정후-동에 통보
 - 동은 주택은행 및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에게 주택은행에서 대출토록 안내
(보증인 1인 연대 보증토록 안내)
- 상환방법
 - 대출은행의 융자 조건에 의하여 상환
 - 전세 계약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전세금 반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삽입하며, 동장은 반환된 금액을 즉시 한국주택은행 피정동지점에 상환함.

2.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지급) 보증 내용

가. 채무 보증 목적 :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나. 지급 보증 금액 : 금 885,000천원

○ 다만, 93년 이전 융자한도액중 미지원액(139,000천원)계속 융자 지원 가능

다. 지급 보증을 하는 기관 :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라. 지급 보증선 : 한국주택은행 부산, 경남지역 본부장

마. 지급(채무) 보증 내용

○ 자 금 명 :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 융자금액 : 885,000천원 및 93이전 융자한도액중 미지원액

○ 상환조건 : 2년이내 정기 상환

단, 전세 재계약시 1회(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이 율 : 3%

• 상환재원 - 신청자부담 : 원금 + 상환이자(3% 금액)

• 사하구청장은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 부담

○ 이차보전

• 90년 융자지원액 이자 차액 2.5% (5.5% → 3% 차액)

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21조

사. 채무 보증 사유

○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전세계약서상에 명기한 사항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 주택은행이 확인함.

○ 손실 보전

(1)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금금 및 그 부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

(2)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 또는 대금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월에 관할 동직원과 융자 취급 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토록 함.

※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손 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 (3) 결손보전후 협약 당사자간 강제 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택은행측의 소송 대리인 선임, 주택은행 명의로 사하구청장의 비용 부담과 책임하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4) 한국주택은행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의 결손 보전이 있는 후에도 사하구청장의 강제 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함.